



교 육 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개정 「고등교육법」 시행에 따른 강사 임용 절차 관련 안내

1. 관련 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(강사)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의8(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)
2. 강사의 공개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학기 중에 발생한 6개월 이하 연구년(발령기간 例 : 9.1.~2.28.)의 경우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며, 동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항 제1호에 의해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(재임용 절차 포함)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또한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,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 종료, 휴직자 복직,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3. 아울러, 최근 일부 대학에서 강사 지원자에게 주민등록등본, 추천서, 사진, 성별 등 강사의 역량과 무관한 신원 정보 또는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는 바, 공정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강사 모집 절차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

행정사무관 정예영

서기관 최화식

고등교육정책과장
06/24
김도완

협조자

시행 고등교육정책과-6976 (2019.06.24.) 접수 교무팀-1622 (2019.06.25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803 전송 044-203-6939 / gj@korea.kr / 비공개(5)

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,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